

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(완구, 학용품)의 안전기준부속서 개정 고시

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(2023. 12. 21.)


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에 따른 어린이제품(완구, 학용품)의 표시사항 개선을 목적으로 「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」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(완구, 학용품)의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하였다.

- 주요 내용 : 가. 수입제품 표시사항 기준을 **제조자명** 및 **수입자명**에서 **수입자명**으로 변경
- 개정일 :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

❖ 「안전확인 안전기준」부속서 6(완구) (일부내용 발췌)

현행	개정(안)
5. 표 시	5. 표 시
-중 략-	-중 략-
-중 략-	-중 략-
5.1.2	5.1.2
-중 략-	-중 략-
5.1.2.4 제조자명	5.1.2.4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(수입품에 한함)
5.1.2.5 수입자명(수입품에 한함)	5.1.2.5 주소 및 전화번호
5.1.2.6 주소 및 전화번호	5.1.2.6 안전 표시(주의, 경고 등)
5.1.2.7 안전 표시(주의, 경고 등)	5.1.2.6.1 사용연령
5.1.2.7.1 사용연령	5.1.2.6.2 크기 및 한계 체중
5.1.2.7.2 크기 및 한계 체중	5.1.2.7 제조국
5.1.2.8 제조국	
-이 하 생 략-	-이 하 생 략-

❖ 「안전확인 안전기준」부속서 11(학용품) (일부내용 발췌)

현행	개정(안)
5. 표 시	5. 표 시
-중 략-	-중 략-
-중 략-	-중 략-
5.1.2	5.1.2
-중 략-	-중 략-
5.1.2.4 제조자명	5.1.2.4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(수입품에 한함)
5.1.2.5 수입자명(수입품에 한함)	5.1.2.5 주소 및 전화번호
5.1.2.6 주소 및 전화번호	5.1.2.6 안전 표시(주의, 경고 등)
5.1.2.7 안전 표시(주의, 경고 등)	5.1.2.6.1 사용연령
5.1.2.7.1 사용연령	5.1.2.6.2 크기 및 한계 체중
5.1.2.7.2 크기 및 한계 체중	5.1.2.7 제조국
5.1.2.8 제조국	
-이 하 생 략-	-이 하 생 략-